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8. 9. 14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일원대우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/ 강남구 개포로 110길 36		
의결번호	2018-구조16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〔심의 내용〕 구조안전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구조안전 분야 〉			
○ 주요기둥에 전이보와 접하는 부분의 경계 조건을 제시하고, 해석결과를 재검토 바라며, 경계조건에 적합한 배근 상세 및 해당 라멘의 내진 배근 상세 추가 바람.			
○ 단위세대의 주요기둥의 주변에 대한 전단을 검토 바람.			
○ ㄱ형태의 주동 교차부의 무용 공간에 슬래브 타설을 명기하고 주근 및 보강근을 배치하기 바람.			
○ 수직철근비 1%를 초과하는 벽체에 대하여 휨방향 띠철근 상세 적용 검토 바람.			
○ 단위세대 슬래브 설계시 기둥 부위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검토와 슬래브 장기처짐에 대한 검토 근거 제시 바람.			
○ 배근 도면을 종합하여 구조도면 보완 바람.			
○ 아파트 평면 외주부에 위치한 길이가 짧은 벽체(예: WA등)에 대한 상세 추가 바람.			
○ SD500은 135°갈고리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내진 철근 SD500S를 사용하기 바람.			
○ 지반조사서상 공내 수위가 GL-5.0m~-5.2m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지하수위를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.			
○ 지하주차장 활하중 3.0KN/m ² 적용하였으나, 지하1층에 중량차량(재활용품 수거차량, 택배차량 등)이 통행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향조정하기 바람. 끝.			

2018.9.14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